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30
------	------

2012. 10. 8.
재정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9월 2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2.10.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실장 권혁소)

가. 제안이유

- IMF·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이후 높은 청년실업률의 고착화 등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청년 고용·직업에 대하여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직·간접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를 설치하고자 함.

- 아울러, 동 센터의 설치·운영 사무는 민간의 전문적인 인적·물적 자원과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 등을 활용하고, 청년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가칭)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구 질병관리본부 1동)
- 시설규모 : 건물 1,782.19㎡(지상6층 건물 중 1층 일부)

2.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년(2012.12 ~ 2014.11)
- 위탁업무
 -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장(場) 제공
 - 국내외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력 및 교류 사업
 -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개발 및 미래 혁신직업 공모사업 추진
- 소요예산 : 연간 약 3,00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설치·운영 계획(행정제1부시장 방침)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청년과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
- 또한, 市 직영시 동일조건의 인력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총 사업비 규모가 확대되어 市에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청년들이 기존의 범주에서 벗어나 새롭게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형 미래 혁신직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를 설치하고 이를 민간이 위탁운영 하도록 하여, 민간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각종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극대화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발굴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지난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던 은평구 구)국립보건원 부지의 종합 활용계획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위탁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나.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추진 방향

- IMF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취약해진 청년 고용상황이 점차 고착화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주로 단기적 처방에 그쳐 질 낮은 일자리가 소폭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이하 “시”)는 이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의 양적 확대 정책을 대신할 저성장·저고용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청년 일자리 발굴을 위한 모델을 구상하였음.
- 그 동안 시는 청년일자리 정책 워크숍(2011.12.6), 일자리 대책 회의(2012.1.6, 2.17)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커뮤니티 센터와 시스템 구축을 결정하였음.
- 이번에 신설되는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이하 “허브”)는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 시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기능, 미래 혁신직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각종 컨설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연구와 교육 및 정책개발(Lab) 기능,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Hub) 기능, 미래 혁신형 직업 발굴 등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화 지원(Factory)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 또한,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청년창업센터’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센터에서 발굴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사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의 필요성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청년 실업율이 일반 실업율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등 열악한 청년 고용 현실이 고착화 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¹⁾.
- 그러나, 그간의 청년 실업 대책이 대부분 행정인턴이나 단기 일자리 창출 등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접근이 요구됨.
- 이런 관점에서 시의 정책과 연계된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을 서울 일자리 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양성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서 허브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시가 구상하는 허브의 역할과 기능이 기존에 청년 실업 문제를 연구하고 각종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해온 여러 민간단체들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허브가 구상하고 개발한 다양한 결과물들을 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이 필요함.

1)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우리나라의 연간 실업율은 3.4%이며 15세 ~ 29세 사이의 청년층 실업율은 7.6% 수준이며, 특히 청년층 실업율은 최근 3~4년 사이 7~8%의 높은 수치를 지속하고 있음. 또한, 서울연구원은 2008년 서울시의 청년 실업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1%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해소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음.

- 또한, 시가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창업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각종 지원기관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중복투자와 기관간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 시는 허브의 운영 방안을 결정함에 있어 민간의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인적·물적 자원과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 활용에 용이하고, 현장과 민간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현재 구상중인 허브의 역할과 기능은 연구와 교육, 일자리 개발, 사업화 지원 등 복잡·다양하고, 각계 각층의 정제되지 않은 요구와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방식이 직접 운영방식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가 구상하는 수준의 허브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이 다수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민간위탁의 속성상 허브 운영의 노하우가 시가 아니라 최초로 선정된 운영주체에게 축적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수탁자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한편, 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중 이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이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서울 각 지역에 산재해 있고, 운영주체도 다양함.

- 허브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시설로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운영주체들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30
----------	------

제출년월일 : 2012년 9월 2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IMF·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이후 높은 청년실업률의 고착화 등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청년 고용·직업에 대하여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직·간접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를 설치하고자 함
- 아울러, 동 시설의 설치·운영 사무는 민간의 전문적인 인적·물적 자원과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 등을 활용하고, 청년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가칭)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구 질병관리본부 1동)
- 시설규모 : 건물 1,782.19㎡(지상6층 건물 중 1층 일부)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년(2012.12 ~ 2014.11)
- 위탁업무

-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장(場) 제공
- 국내외 일자리 유관기관과 교류 및 협력
-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개발 및 미래 혁신직업 공모사업 추진
- 소요예산 : 연간 약 3,00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설치·운영 계획」 (행정제1부시장 방침)
-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설치·운영 변경계획」 (경제진흥실장 방침)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청년과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
- 또한, 市 직영시 동일조건인 인력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상당한 증가로 총 사업비 규모가 확대되어 市에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공공성 확보방안

-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에 시 공무원, 민간전문가, 청년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한 정책결정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시설의 공공성 확보
- 사업화 지원 대상 등을 선정할 때에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성 제고
- 수탁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반기1회)를 실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

바. 향후 추진일정

- '12. 10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2. 11월 : 수탁자 공모 및 선정
- '12. 12월 : 민간위탁 사업 계약심사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13. 2월 :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개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1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15대 중점과제
 - “청년의 자기실현이 보장되는 희망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함께 잘사는 경제】** 청년의 자기실현을 위한 미래 혁신직업 발굴·육성